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용공제사업 감독권 금융위 이관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15호)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1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 금융위원회 이관	4
2. 새마을 금고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규정 정비	17
3.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 등에 과태료 신설	20

I . 제안경위

1. 윤준병의원안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30.
3. 회부연월일 : 2024. 12. 31.

2. 유동수의원안

1. 발 의 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30.
3. 회부연월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안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수취 및 대출 등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 2,0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1,236억원) 대비 적자 폭이 열 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적립했고, 연체율 역시 작년 말 5.07%에서 올해 6월 말 7.24%로 2.17%포인트 높아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까지 불거지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및 제74조).

2. 유동수의원안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수취 및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83조 및 제88조).

Ⅲ. 검토의견

1.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 금융위원회 이관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¹⁾ 및 공제사업²⁾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감독, 명령 및 제재처분을 하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윤준병·유동수의원안 제74조 등).

[현행 및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윤준병의원안		유동수의원안	
업무영역	신용 ¹⁾ ·공제 ²⁾ 사업 제도 ³⁾ ·일반 ⁴⁾ 사업	<u>신용사업</u>	공제사업 제도·일반사업	<u>신용·공제사업</u>	제도·일반사업
관리감독주체	행안부 감독 (신용·공제사업 감독은 금융위와 협의)	금융위(금감원) 직접 감독·명령	행안부 감독	금융위(금감원) 직접 감독·명령	행안부 감독

주: 1) 신용사업: 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여·수산업무

2) 공제사업: 사망, 화재, 사고 등의 발생시 생명공제 및 손해공제를 지원하는 보험업무

3) 제도(운영): 사업승인, 정관변경 인가, 자금차입 승인, 공제규정 인가 등

4) 일반사업: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현행	윤준병의원안	유동수의원안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 부장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금고와 중앙회를	제74조(감독 등) ① (현 행과 같음)	제74조(감독 등) ① ---- ----- ----- ----- -----

1) 금융기관 등이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상대방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수신업무와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는 여신업무 등을 하는 사업임.

2) 공제 조합·협동조합 등이 공제의 이름 아래 조합원으로부터 공제 부금을 받아서 조합원의 사망·상해·화재 따위의 일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현행	윤준병의원안	유동수의원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u>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u> 1. 금고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다만, 제7조, 제12조제5항, 제37조 및 <u>제74조의 3제2항과</u>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독한다. 2. (생략) ② <u>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 -----. ----- -----<u>금융위원회가 주무부장관과</u>----- -----. 1. ----- -----. ----- -----<u>제74조의 3제3항과</u>----- ----- ----- ----- ----- -----. 2. (현행과 같음) ② -----<u>금융위원회, 특별자치시장</u>----- ----- ----- ----- ----- ----- ----- ----- ----- ----- ----- -----.

현행	윤준병의원안	유동수의의원안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금고에 한정한다.		----- ----- ----- ----- -----.
③ <u>주무부장관은</u> 제1 항에 따른 감독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 여금 금고 또는 중앙 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1항제1호 단 서에 따른 감독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 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u>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u> ----- ----- ----- ----- ----- ----- ----- ----- ----- ----- ----- -----.
④ <u>주무부장관은</u>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u>금융감독원장</u> ,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 (현행과 같음)	④ <u>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u> ----- ----- ----- <u>관계자의</u> 출 석 및 의견의 진술을 <u>요구할 수 있으며</u> ----

현행	윤준병의원안	유동수의원안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 <u>특별자치시장</u>·<u>특별자치도지사</u> 또는 <u>시장</u>·<u>군수</u>·<u>구청장</u>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양회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금고 또는 중양회의 의결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u>특별자치시장</u>·<u>특별자치도지사</u> 또는 <u>시장</u>·<u>군수</u>·<u>구청장</u>은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생략) ⑦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양회의 <u>공제사업</u>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 ⑤ -----<u>금융위원회</u>, <u>특별자치시장</u>-----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금융위원회</u>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u>특별자치시장</u>----- ----- ----- ⑥ (현행과 같음) ⑦ ----- -----<u>신용사업</u> 및 <u>공제사업</u>----- ----- ----- ----- -----.

현행	윤준병의원안	유동수의원안
<u><신설></u>	⑧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u><신설></u>	⑨ 금융위원회는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제8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또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 ----- ----- -----

현행	윤준병의원안	유동수의원안
는 중앙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u>주무부장관은</u> 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 ⑥ (현행과 같음)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u>주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u>-----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u>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u>

현행	윤준병의원안	유동수의원안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또는 주의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에----- ----- ----- ----- -----. ⑤ -----제3항----- ----- ----- ----- -----.

현행	윤준병의원안	유동수의원안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2항에</u>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u>제74조의3제2항에</u>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		⑥ ----- ----- -----제 <u>3항에</u>-----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83조(청문 등) ----- ----- ----- ----- ----- ----- ----- ----- ----- ----- -----제 74조 <u>의3제3항에</u>----- ----- ----- ----- -----

현행	윤준병의원안	유동수의의원안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 및 제도·일반사업은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신용·공제사업의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리감독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용·공제사업의 경우는 금융위가 직접감독 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건전성 및 경영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새마을금고의 신용 또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찬반의견이 존재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금융위의 직접감독을 ①찬성하는 입장은 i)주무부처가 금융위

가 아닌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재무건전성을 위해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 감독권이 금융위에 부여되어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만 주무부처(행안부)가 감독 중³⁾이라는 점 고려하면, 새마을금고 역시 금융위가 직접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161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후단 생략)

⑧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중앙회·수협은행 및 조합협의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수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1조의4(설립) ①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후단 생략)

③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상호금융기관의 감독주체]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현행)
감독주체 (검사주체)	신용 사업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장관·금융위 협의 (행안부장관)
	공제 사업	금융위 (금감원)	해수부장관 (해수부장관)	산림청장 (산림청장)	행안부장관·금융위 협의 (행안부장관)
	기타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해수부장관)	산림청장 (산림청장)	행안부장관 (행안부장관)

ii) 또한, 2023년 6월경 새마을금고 채무자들의 연체율 급등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⁴⁾가 발생한 이후,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있는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직접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

[상호금융기관의 연체율 현황]

(단위 : %, %p)

구분	'22년말(A)	'23.6월말	'23년말(A)	'24.6월말 (B)	증감(B-A)
새마을금고	3.59	5.41	5.07	7.24	+2.17
기업대출	5.61	8.34	7.74	11.15	+3.41
가계대출	1.15	1.57	1.52	1.77	+0.25
신용협동조합	2.47	4.03	3.63	6.25	+2.62
농업협동조합	1.18	2.34	2.65	3.65	+1.00
수산업협동조합	2.00	3.53	4.14	6.08	+1.94
산림협동조합	1.77	3.31	3.41	5.63	+2.22

자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4)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사태는 2023년 6월 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2022년말 기준으로 10개의 금고의 연체율이 10%를 초과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발표에 따라 일부 예금자들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고, 일부 금고에서는 예금자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음.

한편, 금융위의 직접감독을 ②반대하는 입장은 i)새마을금고는 2024년 6월말 기준 신용사업 비중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감독권을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기관 전체의 감독권을 이관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임.

또한, ii)행안부장관은 2024년 금융위원회와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2024. 2. 5.)⁵⁾을 체결하여,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검사 참여 강화, 양자간 정보공유체계 신설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① 금감원·예보의 새마을금고 검사 참여범위 대폭 확대

- 참여수준 : (기존) 금감원 검사 인력 지원 → (개선) 검사계획부터 금감원·예보 참여
- 대상금고 : (기존) 20여개 → (개선) 40여개(‘24년 32개 실시)

② 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금감원·예보 간 정보공유체계 신설

예) 금감원·예보·중앙회 간 업무보고서, 예수금 및 가용유동성 공유 등

③ 상호금융정책협의회*와 2024년 4월 신설된 상호금융팀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수준을 강화

* 금융위(부위원장 주재),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각 상호금융중앙회 등 참석

참고로,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현재로서는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의 내실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감독권 이관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새마을 금고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규정 정비

개정안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 및 금고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회계처리 기준과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 제32조의2 및32조의3).

현행	윤준병의원안
<신설>	제32조의2(회계)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금고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신설>	제32조의3(금고의 결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이영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윤준병의원안
	② 금고의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 및 금고의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계 및 결산한 것은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7조6), 결산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9조7)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최근 새마을금고 채무자 연체율 급등에 따라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경영상태가 불안정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감독강화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고 보임.

6)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회계)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7)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9조(금고의 결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회계처리기준과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감독권 이관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감독권의 금융위 이관 문제에 수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3.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 등에 과태료 신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사유로 금고 또는 중앙회가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유동수의원안 제88조제2항제2조 신설).

현행	유동수의원안
제88조(과태료) ① (생략)	제8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고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신설>	1.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신설>	2.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면, 감독기관은 새마을금고의 업무와 재산이 안정적으로 확보·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상호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입법례]

법률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u>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17. 제146조에 따른 중앙회의 감사나 제162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u>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16.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u>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처

02)6788-5333